

(問) 法律 2482號 第2條 第3項에 規定한 特殊建物은 “特約付火災保險” 加入을 原則으로 하되 時價決定基準額에 의해 保險金額은 所有者가 定하고 加入시키면 모든 節次가 끝나는데도 本의 的意思와는 다르게 保險會社側決定價額으로 加入을 要求하고 있으며, 또한 消滅式 또는 貯蓄性의 加入方法을 두어 加入者가 兩者擇一하도록 하는 方法은 없는지요?

〔答〕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에 立法취지로 보아 保險金額을 保險加入者가 決定한 경우.

첫째로 特殊建物 所有主는 保險料負擔을 고려 特殊建物의 價額을 낮게 策定, 災時 一部保險에 依한 人命被害에 對한 適正한 补償은 커녕 實際损害額을 补償받을 수 없을 경우 損害復舊에 기할 수 없으며 保險契約者 및 第3者에 對한相當한 金額의 补償이 不可能할 경우에는 社會的 문제가 發生하게 될 것이며,

둘째로 大型事故가 發生하였을 경우에 建物所有主가 다행이 財產이 있을 경우에는 그 补償이 可能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義捐金이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補助에 依하여 약간의 补償을 할 수 밖에 없는 實情등을 고려 灾害復舊費 또는 人命被害補償을 制度의 으로 責任지는 保險制度를 同法律의趣旨에서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實例로 同保險의 社會保障的性格을 감안하여 身體損害賠償特約

付保險金은 이를 押留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保險金의 請永도 保險契約者가 아닌 被害者가 直接 保險會社에 請永할 수 있도록 하여 被害者の 早速한 安定을 圖謀코자 한것 等을 들수 있다.

時價決定方法과 위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同保險이 任意保險이 아닌 社會保障的性格을 고려 할 때 保險金額을合理的으로 決定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준이 필요하므로 保險金額決定方法의 關係法條文과 關連하여 그 基準은 財務部令으로 定하도록 하고 있다.

에 의하여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萬一 保險契約當事者間에 合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特殊建物을 기준으로 하여 決物時價調查會에 회부 의견을 들어 同加額을 建物主에게 제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同保險은 義務保險이면서도 보험계약에 있어서 특수 건물 소유자가 시가결정에 异議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异議제의를 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貯蓄性保險加入을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加入者的 意思에 따라 장기 저축성보험 加入을 할 수 있으며 특약부 화재보험에 부가하여 風災 水災 또는 倒壊등으로 인한 손해를 擔保하는 保險에 加入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혹자는 同法律 第5條 第5항에서 규정한, 特수건물 소유자는 제1항의 특약부화재보험 계약을 매년 更新하도록 한 것을 들어 마치 一年기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같이 해석하고 있으나 동항은 1회만을 가입한 후 미생신계약의 상태, 즉 무보험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반드시 1년마다 계약체결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特殊保險 1部>
차장 조정수

相談코너

特殊保險

따라서 特殊建物의 時價는 特殊建物時價決定基準額表에 의한 金額定하도록 하고, 該當建物의 건축설계 요령, 전축자재의 우열, 施工方法의 差等, 地域差, 用度, 使用期間에 따르는 감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 同基準額의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않는範圍內에서 加減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위를 초과하여 建物時價를 加減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契約當事者間의 合議